

서울특별시교육청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박순규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275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04월 01일
발 의 자 : 박순규 의원(1명)
찬 성 자 : 김기덕, 김생환, 김재형,
김제리, 김태수, 김평남,
김희걸, 박기재, 박상구,
성흠제, 송명화, 송아량,
양민규, 이상훈, 이영실,
임종국, 장상기, 전석기,
최 선, 최응식, 최정순,
황규복 의원(22명)

1. 제안이유

- 현행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의 신고의 접수·처리 조문내용과 별첨 신고서 피신고자의 정보 형식이 맞지 않아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0조의 조문 내용을 준용하여 개정 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불법하도급 신고 접수 요건을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0조(위반행위의 신고 및 통지)의 조문을 준용하여 변경함. (안 제4조제1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서울특별시교육청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제3조의 신고에 대한 접수요건은 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.

1. 신고자의 성명·주소
2. 피신고자의 성명 또는 명칭(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)
3. 위반행위의 내용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4조(신고의 접수·처리) ① 제3조의 신고에 대한 접수요건은 <u>다음 각 호와 같다.</u></p> <p>1. <u>신고자의 실명, 연락처 등 인적 사항이 확인 가능한 경우</u></p> <p>2. <u>피신고자의 성명·주소 및 불법 하도급 거래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첨부된 경우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<신설></u></p> <p>②·③ (생략)</p>	<p>제4조(신고의 접수·처리) ① ----- ----- <u>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.</u></p> <p>1. ----- <u>성명·주소</u></p> <p>2. ----- <u>성명 또는 명칭(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)</u></p> <p>3. <u>위반행위의 내용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</u>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